

# 공기업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

2020. 5.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CONTENTS

---

I.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1
II. 부정청탁의 금지 .....	5
I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	10
IV. 외부강의등 .....	21
[별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5



## I.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 공기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공기업(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공기관인 공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A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 민간기업 임직원이 공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기업(공공기관)의 사외이사(비상임)를 겸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공기업의 비상임 사외이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사안의 민간기업 임직원은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민간기업 임직원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공기업 내규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법령이 아닌 기관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해당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예시)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

▶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대표자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의 대표자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직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11조제1항제2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외국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그 대표자는 임원으로 보는 바, 외국은행의 대표자도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 ◇◇공공기관의 본사 별관 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A는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담당자인 B의 배우자 C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줬고, B는 C로부터 건설업자 A가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줬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 공직자인 B는 배우자인 C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A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이행했다면 B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2호).
  - 반면, 배우자인 C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도 반환도 하지 않았다면, B는 배우자인 C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2호).
- 건설업자 A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공직자의 배우자인 C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공기업 직원 A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만난 민간기업 직원 B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 사안에서 금품등(명절선물)을 제공받는 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II. 부정청탁의 금지

### □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부처의 국장인 A의 자녀 B가 ◇◇공기업에서 실시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에 응시하였는데, A는 해당 공기업 인사담당자인 C에게 자신의 자녀인 B가 응시하였으니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B가 합격했다면 A, B, C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A는 제3자(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공기업의 인사담당자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A의 자녀 B가 채용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과태료 부과 사례

#### 1. 채용 관련 자료 요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과 5>

A는 B를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B는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A 10,000,000원, B 5,000,000원

2. 직원 채용 청탁 전화 <수원지방법원 2018과 52>

위반자 A는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0원

3. 제3자를 통해 본인의 승진 청탁 <청주지방법원 2018과 165>

위반자 A는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냄

▶ 처리결과 : 과태료 3,000,000원

4.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청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과 1303>

A, B는 2017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처리결과 : 과태료 각 500,000원

□ 계약당사자 선정 · 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공공기관이 내부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된 건설업자 A는 지인인 ○○공공기관의 직원 B를 통해 해당 보수 공사가 수의계약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계약담당직원 C에게 자신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청탁하였고, 이 청탁에 따라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다면, A, B, C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관련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 계약당사자 선정 · 탈락 관련 부정청탁 과태료 부과 사례

1.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청탁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과 2>  
 위반자 A는 B군 의원인데, 유한회사 C가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15,000,000원
2. 제3자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부탁 <울산지방법원 2019과 72>  
 위반자 A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A의 동생 H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I에게 H가 운영하는 통신업체 J와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9,000,000원

## □ 공공기관의 재화 등의 매각·교환·사용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직무관련자인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을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되고, 이를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 한편, 민간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청탁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공공기관의 재화 등의 매각·교환·사용 등 관련 부정청탁 과태료 부과 사례

교육공무원들이 이용 가능한 수련원 객실 이용 부탁 <청주지방법원 2018과 1041>

위반자 A는 ○○도의회 직원 C 등을 통하여 ○○교육청 D에게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천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E수련원 F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함

▶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원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우선 구매 요청 행위

▶ 장애인기업을 운영하는 A가 최근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동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직원 결혼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 입찰참가업체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선물 제공

▶ A공공기관은 내부 전산망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하였고 B업체 등이 참여하였는데, A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B업체의 영업담당자가 5만원 상당의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등과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사안과 같이 입찰진행 등으로 직무밀접도가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선물의 가액 평가

-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 가액을 초과한 것인가요?

-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금품등 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등을 제공받음 <청주지방법원 2018과 165>  
위반자 A는 E식당, F유흥주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 H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J 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K회사 L로부터 37,5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음  
▶ 처리결과 : 과태료 2,000,000원
2. 금품등 제공 의사를 표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과 110>  
위반자 A는 2017년 설명절 경에 자신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중 교감 B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뇌삼을 제공하려 하였고, 같은 해 추석명절 경에 자신의 채용 및 근무내용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C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유과를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원

## □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제공할 상품 후원·협찬

- ▶ A광역시가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된 지역의 B공공기관은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제공할 상품을 후원·협찬(상품의 가액은 약 1,000만원)하고자 하는바, B공공기관이 후원·협찬을 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 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A광역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 공공기관의 친목회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인 ◇◇연구소는 현직 및 퇴직자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친목회를 운영 중인데, 동 친목회가 매년 연구소 현직원들 중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규약에 따라 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친목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안과 같은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상 허용 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 A항만공사(공공기관)는 선박 노선 개통식을 취재할 국내 해운 담당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바, A공사는 국내 모든 해운 담당 기자들에게 안내메일을 보낸 후 참가를 희망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 기자들에게는 ◇◇항까지의 교통과 식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뷔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이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 사안의 행사가 위와 같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경연·추첨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환경협회는 환경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현장 참여자 중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5만원), 커피 교환권(3만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전시회에 참여한 공직자등이 당첨된 경우 상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 공직자등이 환경관련 전시회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 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음향(악기)기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100명에게 음악노트 등(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신청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신청한 사람이라면 선착순으로 100명에게는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음악노트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신청자 중 공직자등이 해당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이 지방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용 지원

▶ ◇◇시 산하 A공공기관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해외에서 개최하며, 워크숍에 ◇◇시의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시의원들의 교통, 숙박 비용은 초청자인 A공공기관에서 부담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다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해외출장 경비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하며,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 ▶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 ▶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 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직무관련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이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 □ 해외출장 관련(수익자 부담 규정)

- ▶ 특정제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A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시 해외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외출장검사가 필요한데, 이 때 검사수수료 외에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검사 신청을 한 제품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직무관련 민간 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① 현지 확인(수출입 여신심사, 조사·검수·검역 등)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③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익자부담 규정 예시)

제34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 검사를 받으려는 자

#### ○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부 고시)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 금품등 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해외여행 경비 제공)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및 향응을 제공받음 <울산지방법원 2019과 72>

위반자 A는 C시 공무원으로서 청사 내 CCTV 및 통신장비 설치업무를 담당 하던 중, CCTV 설치업체 D 대표 E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E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고, ○○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F 영업부장 G로부터 3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처리결과 : 과태료 2,350,000원

## □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퇴직한 경우 과태료 통보 절차

- ▶ 공공기관 감사 시 퇴직자인 A가 재직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70여 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 이 경우 A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통보 의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법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하여야 할 것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금품등 수수 당시 공직자였다면 동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IV. 외부강의등

### □ TV 또는 라디오 인터뷰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교통안전 관련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하는 ◇◇공단 직원들이 교통안전 상식 전달, 대형교통사고 관련 의견 개진 등의 내용으로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관의 임원인 A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른 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을 맡고 있는바, 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강의 영상 등을 유튜브에 탑재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제작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여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외부 강의등으로 볼 수 있나요?

○ 공직자등 본인이 제작한 강의 등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탑재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축하, 기조연설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민간기관이 개최하는 포럼 측에서 공직자등에게 축하 또는 기조연설을 요청하여 공직자등이 해당 축하 또는 기조연설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이 되나요?

○ 축하 또는 기조연설이 단순히 축하나 환영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여부

▶ 통신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등 A에게 A의 모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5G 등 A의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A는 재능기부형식으로 사례금 없이 강의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종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각 공공기관의 내부 행동강령 등에서 별도의 제한사항을 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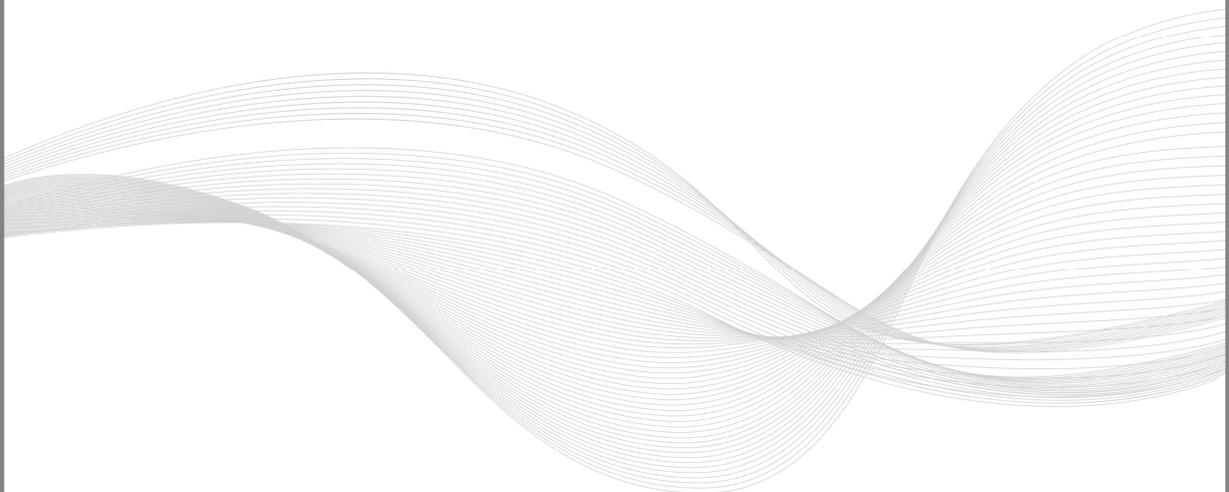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0. 5. 27. 시행)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20.5.27.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p> <p>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p> <p>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p> <p>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p> <p>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및 학교법인의 임직원</p> <p>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p> <p>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p> <p>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p> <p>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p> <p>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p> <p><b>제3조(국가 등의 책무)</b>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2조(윤리강령)</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p> <p>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4조(공직자등의 의무)</b>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b></p> <p><b>제5조(부정청탁의 금지)</b>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6. 5.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li> <li>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li> <li>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li> <li>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li> </ol>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 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b></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 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p> <p>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p> <p>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p> <p>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p> <p>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p> <p>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 하도록 하는 행위</p> <p>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p> <p>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p> <p>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p> <p>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p> <p>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li> <li>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li> <li>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li> <li>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li> <li>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li> <li>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li> <li>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li> </ol> <p><b>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b>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b>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 참여 일시중지</li> <li>2. 직무 대리자의 지정</li> <li>3. 전보</li> <li>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li> </ol> <p>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li> <li>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li> <li>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li> </ol>	<p><b>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b>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li> <li>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li> </ol> </li> <li>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li> <li>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li> <li>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li> </ol> </li> <li>3. 신고의 경위 및 이유</li> <li>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li> <li>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b>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b>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li> <li>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li> <li>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li> </ol> <p>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p> <p>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p> <p>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 · 확인 · 처리 및 기록 · 관리 ·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b>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li> <li>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li> <li>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li> </ol> <p><b>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li> <li>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li> <li>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ol> </li> </ol> <p><b>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b>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li> <li>2. 사무분장의 변경</li> </ol> </li> </ol> <p><b>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b>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li> </o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b>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b>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li> <li>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li> </ul> </li> <li>2. 수사기관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li> <li>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li> </ul> </li> </ol> <p><b>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b>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p><b>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b>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p> <p>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b>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b>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li> <li>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li> <li>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li> </ol> <p>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b>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 사유 및</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p> <p>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li> <li>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ol> <p><b>제14조(종결처리 등)</b>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li> <li>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li> <li>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li> <li>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li> <li>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li> </o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p> <p><b>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b></p> <p>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li> <li>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 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li> <li>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li> <li>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li> <li>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li> </ol> <p><b>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b>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p> <p>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b></p> <p><b>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b>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li> <li>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li> <li>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li> <li>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li> <li>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li> <li>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b></p> <p><b>제17조(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b> 법 제8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p> <p>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p> <p>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p> <p>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b>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li> <li>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li> </ol> <p>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li> <li>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li> </ol>	<p><b>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b>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li> <li>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li> </ol> </li> <li>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li> <li>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li> <li>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li> </ol> </li> <li>3. 신고의 경위 및 이유</li> </o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p> <p>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p> <p>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p> <p>5. 금품등의 반환 여부</p> <p>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p> <p><b>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b>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p>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p> <p><b>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b>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p> <p>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p> <p>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p><b>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b>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p> <p>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p><b>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b>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p> <p><b>제23조(종결처리 등)</b>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p><b>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b>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b>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9. 11. 26.&gt;</p> <p>③ 삭제 &lt;2019. 11. 26.&gt;</p> <p>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19. 11. 26.&gt;</p>	<p>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p> <p>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p> <p><b>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b>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b>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b>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li> <li>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li> <li>3. 외부강의등의 주제</li> <li>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li> <li>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1. 17.&gt;</p> <p><b>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b> 공직자등은</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b>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li> <li>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li> <li>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li> </ol>	<p>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li> <li>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p> <p><b>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b>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p>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li> <li>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li> <li>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li> <li>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li> </ol> <p><b>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b></p> <p><b>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b>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li> <li>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li> <li>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li> <li>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li> </ol> <p><b>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b>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li> </ol>	<p><b>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b></p> <p><b>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b> 누구든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그 감독기관</p> <p>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p> <p>3. 국민권익위원회</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p> <p>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p> <p>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p> <p>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고자의 인적사항</p> <p>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p> <p>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p> <p>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p> <p>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p> <p>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p> <p>3. 신고의 경위 및 이유</p> <p>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p> <p>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p> <p><b>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b>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p>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p> <p>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p> <p>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p> <p>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p> <p>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b>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b>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p> <p><b>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b>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p> <p><b>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b>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li> <li>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li> <li>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li> </ol> <p>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b>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속기관장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li> <li>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li> <li>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li> </ol> </li> <li>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li> <li>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li> </ol> </li> </o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14조(신고의 처리)</b>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p> <p>3. 수사기관의 조치</p> <p>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p> <p>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p> <p>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li> <li>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li> </ol> <p><b>제35조(종결처리 등)</b>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p><b>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b>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p> <p><b>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b>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li> <li>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li> <li>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li> </ol>	<p><b>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b>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b>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b>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li> <li>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p> <p><b>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b>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p> <p>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p> <p>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lt;개정 2019. 4. 16.&gt;</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b>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b>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b>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b>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 하여야 한다.</p> <p><b>제18조(비밀누설 금지)</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 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li> <li>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li> </ol> <p><b>제19조(교육과 홍보 등)</b>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b>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b>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p>	<p><b>제42조(교육 등)</b>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 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8. 1. 17.&gt;</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li> <li>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li> <li>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징계 및 벌칙</b></p> <p><b>제21조(징계)</b>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b>제22조(벌칙)</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li> <li>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li> </ol>	<p><b>제43조(징계기준)</b>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의사표시를 한 자</p> <p>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p> <p>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p> <p>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p> <p>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p> <p>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p> <p>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b>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b>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b>제23조(과태료 부과)</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li> <li>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li> </ol> <p>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p>	<p>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li> <li>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li> <li>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li> <li>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li> <li>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li> </ol> <p><b>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b>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취소한다.</p> <p>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p> <p>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p> <p>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p> <p>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p> <p>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p> <p>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24조(양벌규정)</b>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부칙</b> &lt;제16658호, 2019. 11. 26.&gt;</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